제367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9 호

국회사무처

2019년3월2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8.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9.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 20.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상정된 안건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이개호・박완주・전재수・서영교・김영호・임종성・소병훈・김철민・
	심재권・어기구・윤관석・김두관・민병두・최도자・유승희・문희상・박정・신창현・홍의락・
	김정우·유동수·정성호 의원 발의)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김용태·김광림·
	송희경·이철규·김순례·金成泰·정유섭·조훈현·김진태 의원 발의)2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3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3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조승래·서영교·박남춘·
	우도수,가차이,바차데,ㅇ여호,저게수,저서ㅎ,아규배,기벼우,바저 이의 바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4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홍문표・金成泰・송희경・곽대훈・ 김규환 · 김용태 · 김진태 · 곽상도 · 김태흠 · 경대수 · 윤종필 · 서청원 · 김종대 · 김성찬 · 김선동 ·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 최도자 • 주호영 • 김종회 • 강창일 • 주승용 의원 발의)6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삼화・박병석・송옥주・오신환・ 유의동·이석현·이용득·이용주·정병국 의원 발의)6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6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6 15. 17.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 18. 19.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법제사법·기획재정·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 환경노동위원장 제출)8 20.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5분자유발언9

(14시21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나경원 의원 등 113인으로부터 국무 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 습니다.

3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 보자(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황희 의원 대표발의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로 노동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5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황주홍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덴마크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5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문희상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이개호·박완주·전재 수·서영교·김영호·임종성·소병훈·김철 민·심재권·어기구·윤관석·김두관·민병 두·최도자·유승희·문희상·박정·신창현· 홍의락·김정우·유동수·정성호 의원 발의)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김용태·김 광림·송희경·이철규·김순례·金成泰·정 유섭·조훈현·김진태 의원 발의)

(14시23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송기헌**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 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징계심의에 대 한 비공개 규정을 삭제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의 결정족수를 규정하며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 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 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필 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 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을 삭제 하고 개정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 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 로, 보호관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내용 등을 삭제하고 개정 사항의 체계 적 정리를 위해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수정하 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검 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서 특 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위원장 제출)
-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28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4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안, 의사일정 제6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

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이태규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3건의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병두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을 통 합 조정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 칙과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되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고 법원·국회에서의 증 언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8인, 반대 4인, 기권 3인 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기권 4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노웅래·조승래·서영교·박남춘·유동수·강창일·박찬대·오영훈·전재수·정성호·안규백·김병욱·박정 의원 발의)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33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7항 한국교직원공제 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임재훈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임재훈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임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 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회 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보험 성격의 급여의 경우 상법 제662조 에 따라 5년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준용할 수 있 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및 박 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의원, 조훈현 의원, 이동섭 의 원, 이학재 의원, 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5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 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 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으로서 한국 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2으로서 사립 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교 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홍문표・金成泰・송희 경·곽대훈·김규환·김용태·김진태·곽 상도 · 김태흠 · 경대수 · 윤종필 · 서청원 · 김종대 · 김성찬 · 김선동 · 홍철호 · 박명재 의원 발의)

(14시37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0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백승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백승주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백승주 위원입니 다.

국방위원회 소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 애인이 된 병사가 군무원에 지원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가 부사관으로 임용 된 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군무원에 지원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 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라 면 장교·부사관·병 등의 신분과 현역·예비역 여부와 무관하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 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6인, 기권 7인으로서 군 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 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 승용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1항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화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鄭仁和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수뢰 죄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 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위 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되 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 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삼화·박병석·송옥주· 오신환·유의동·이석현·이용득·이용 주·정병국 의원 발의)
-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42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 정 제14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채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한정애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생활폐기물 수집 · 은반으로 구체화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발주한 철거공사에 분별해체 의무를 부과 하려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사용 용도는 법령으로 제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시납부 기간을 확대하 고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권미혁·황주홍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 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정애·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채용 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 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 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 업ㆍ재산 등 이러한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여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그리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8인. 기권 5인으로서 폐 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8인, 기권 8인으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환 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인으로서 근 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8 인으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7.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 18.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시49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7항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황주홍**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해수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 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해면 상뇌증, 일명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 가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 국 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작년 10월 10일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실시했고 12월 3일과 12월 13일 두 번의 공청회를 열어 그 적절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안에는 우리의 검역 주 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권리는 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호 주산 쇠고기에 비하여 낮은 가격의 유럽산 쇠고 기가 유입될 경우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감소 등 으로 우리 한우산업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빈번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도 아직 정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 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은 네덜란드 ·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깊은 우 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한 것은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쇠 고기 수입 허용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WTO에 제소될 수 있고 만약 패소하게 되어 EU 전체에 대한 쇠고기 수입을 일시에 허용하게 된다면 우 리나라 축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89인, 반대 4인, 기권 31 인으로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 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32 인으로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법제사법·기획재정·교육·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53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국정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의 상임위 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 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5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상 5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 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55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 구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강효상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강효상**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환경노동위 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및 소관기관 등에 대하여 4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대구지방환경청의 영양 AWP 풍력발전 단지 전략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감사, 둘째 불법 적 토석채취 등 경주시와 천우개발의 유착 혐의 에 대한 감사, 셋째 한국환경공단의 농촌폐비닐 재활용시설에 대한 감사, 넷째 환경부의 대구 물 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회의록을 작 성하지 않고 평가 당일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등 선정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 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 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5시03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 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 사회지도층들이 연루 된 윤중천 게이트는 부패한 사업가가 검찰과 군 등의 고위공직자들을 이용해 추잡한 향응으로 잇 속을 챙기려 한 전형적인 부패 스캔들입니다. 그 리고 그 부패 공직자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에 이 어 범죄사건을 축소 · 은폐 수사한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 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박영선 장관후보자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CD 발 언을 비롯해 모든 초점이 온통 박근혜정부의 부 실 인사검증을 향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당시 TV조선은 김학의 차관 임명 하루 전날에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갔음에도 부적격자를 차관으로 임명한 당시 청와대의 무능하고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마땅히 질타받아야 합니다.

당시 김학의 차관은 실력이나 신망 등에 있어서 차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이 법조계에 파다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부실 검증을 거쳐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의미할 뿐 법적으로 처벌할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청와대가 비위 의혹을 알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 사건의 핵심과도 한참 비계간 이야기입니다.

지금 밝혀야 할 것은 김학의 차관의 사퇴 후이루어진 수사를 누가 방해하고 은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 전 차관 낙마 이후 경찰에는 새 수사팀이 꾸려졌고 이 수사팀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수차례 기각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건을 담당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의혹 해소가 가장 급선무인데도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 석실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가 김 학의 전 차관의 경찰조사에 입회하는 등 변호를 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또 박영수 변호사도 김 차관을 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재순 변호 사는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법률 멘토단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이재순 변호사는 현재 채동 욱 전 검찰총장과 법무법인 서평에서 함께 일하 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동기로 아주 가까운 절친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영수・채동욱・이재순 이 세 사람은 법조계에서 소위 영수파로 불릴 만 큼 특수통 검찰 출신들로 끈끈한 인맥을 이어 오 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공모해 외압 혹은 청 탁을 했는지 여부도 이번 수사에서 앞으로 밝혀 져야 할 일입니다. 또 이재순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냈는지 혹은 불법 변호 는 없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는 독립된 특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조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또 당시 수 사 실무자들이 현 검찰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조 사의 적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고 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 는 안 됩니다. 즉각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임 명되어 철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도 양날의 칼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과 공직사회가 많이 맑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사건이 더 이상 되 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뿌리를 발본색원해 악습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 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출신 위성곤 의원 입니다.

오는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이 발발한 지 71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이고 70년이 지난 지금 도 도민들의 가슴속에 크나큰 상처로 남아 있습 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5일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제주 4·3 사건 해결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 을 촉구하는 세계 대학생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 섰습니다.

제주 4·3 문제 해결에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를 비롯한 제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6년, 2017년 미국 의회에 제주 4·3 사건 치유에 한미 공동위원단 구성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3 유족회,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지난 11월 미대사관에 제주 4·3 미국 책임촉구 10만인 서명 용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이유는 제주 4·3 사건이 미국 군사고문

단이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던 미군 정 시기에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치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 제주를 방문했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좌관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책임 과 정의·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환기적 정 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서 정의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도 없다고 했습니 다.

아울러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최고의 강 국이며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 습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양국 간의 신뢰를 증진할 것이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 구합니다.

제주 4·3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가 슴속에 크나큰 아픔으로 남아 있으며 유족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 니다.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어 려움마저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였지만 유족들의 정신적 · 경제적 아픔 을 치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 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 · 심리적 치유를 위 하여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걸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을 통 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 발전 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 복하고 아직도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유족 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 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나오 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어제 저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개별 회사의 주주총회에 왜 참석하느 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회에서조차 재벌 개혁 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렇게라 도 나서야 한다는 마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 부결이라는 성과를 내며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에 한걸음 더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양극화 문제이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고용 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 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잘 되어야 한다는 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소득 양극화의 원 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우선되었어야 합니다. 즉 현 정부의 공정경 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재벌 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갑질 문제가 최우선적으 로 근절되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 생협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격차가 줄어들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시장구 조 개선을 통한 임금 상승을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공 정경제를 위한 노력과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 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품단가 가 올라가서,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돼서 생산 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갑질을 단속하고 제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공정거래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 행태 를 바꿀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 여당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조항 4개 중 핵심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과연 친재벌 정책을 펼친 이명 박·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러한 모습은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재벌 개혁을 반대하는 한국당 에 협상의 우위를 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차등의결권, 가업상속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영권 보호장 치 마련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지만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 이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기업이 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영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라 도전 대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능력 있는 경영진이 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정부 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사 명과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지 마시기 바랍 니다.

저도 국회의 구조상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논의 조차 안 되고 통과도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합니 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회만 탓하고 손 놓고 있 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기존의 법제도하에서 집행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공정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금융위 같은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노동부, 산자부, 국토부 등 모든 부처가 기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 령을 개정하면 당장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일정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행 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 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과 상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을 개정하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

.....

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처별로 공정경제 관련된 시행령을 발굴하고 제정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천 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 원입니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재정·외 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경제 기조가 아주 튼 실하다고 합니다.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기업인,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 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당초 2.6%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디스 등 유수의 신용평가 기관들은 2% 내외로 상당히 낮게 예측하고 있습 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문재인 정부 들 어 급격히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명이 늘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으로 만들어 낸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지난달 60대 취업자 수가 39만 명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0대 취업자 수는 11만 명,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8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고용의 질이 나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취업통계에 넣어 겉보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보이게 한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월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감소했습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75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36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 일자리인 것입니다.

전체 일자리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4.7%지만 취업을 포기한 사람, 지금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13.4%로 공식 실업률의 3배 가 까이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대체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경제 사정이 호 전되었다고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죽을 지경이라고, 살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 억지 통계를 만들어 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닙 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호언했 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업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근로 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 533 개 버스 업체가 파산 지경이라고 합니다.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길거리에 내몰릴 상황이라고 합니 다. 버스 업계가 파산하거나 운영 노선을 단축할 경우 도시 서민들과 농산어촌 그리고 산간벽지에 사는 국민들과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 습니다.

일자리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업을 옥죄어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박 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정부의 헛다리 정책의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 어 보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터전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골목길 상가와 사무실들이 텅텅 비어 가고 있습 니다. 잘나가는 충무로의 사무실 공실률이 무려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남의 금싸라기 땅인 논현동은 공실률이 19%나 됩니다. 지난 정부 말 1%였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지역 상가 공실률이 지난해 말 19%로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무려 2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미명 아 래 부동산 가격을 올려 세금 폭탄만 터뜨리고 있 습니다.

세금 폭탄의 귀착점은 서민들입니다. 임대료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 지갑만 털 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수도권 규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과감하게 푸세요. 기업 들이 신명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요청드립니다.

아우성치는 골목길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문재인 정부에게 정중히 경고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이 선이고 정의라는 오만과 독 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만한 정권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출신 이채익 국 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데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 이 많으십니까?

날씨가 풀리면 기분 좋게 바깥 활동을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대한민 국에서는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걱정에 밖으 로 나서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 난입니다. 재난은 정부와 국가기관이 총력을 다 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재난에 속수무 책입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언제 오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대책과 정반대되는, 다시 말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문재인 정 부는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3만 6908명이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을 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 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LNG발 전이 메웠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2016년 31%에서 2018년 23%로 낮아졌고 석탄은 39%에서 41%로, LNG발전은 22%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이 18.9%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석탄은 14%, LNG는 26.8%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MWh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 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자료입 니다.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갖고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 무총리에게 '미세먼지 정책에 반하는 탈원전 정 책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들지 않고 본 의원의 질문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차고도 더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세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막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언스는 원자력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그런데도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원전이퇴출될 위기여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즉 탄소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합니다. 당연히 탄 소 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원전은 미세먼 지 역시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지난해 유엔 산하 IPCC 제48차 회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떤 경우든 59%p에서 106%p 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국무총리는 국민들 요 구와 국제적 요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 다.

총리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 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민중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훈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그의 오른편과 왼편 무덤은 모두 고등학생들의 것이었다. 아마도 중학교 졸업사진일 검은 동복 차림의 앳된 얼굴들을 나는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그의 형은 계속해서 말했다. 동생이 운이좋았다고. 총을 맞고 바로 숨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열기 띤 눈으로 내 동의를 구했다. 동생과나란히 도청에서 총을 맞았으며 동생과 나란히묻힌 고등학생 하나는 바로 안 죽고 살아 있다가확인사살을 당했던 모양이라고.' 소설가이자 시인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단락입니다.

'감각과 존재와 육신을 광주의 아픔을 간직한 분들에게 빌려 주었을 뿐이었다'는 작가의 말처 럼 한 구절, 한 구절 광주 시민들의 고통이 그대 로 전해 옵니다.

역사 왜곡과 망언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보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수구·보수 세력을 모아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이 글에 묻어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단 1%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요?

이제 세상이 변해 가니 우리 자식들 억울한 죽음 이제라도 한을 풀어 볼까,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숨죽여 왔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있었고 자식을 잃은 광주 유가족들이 다시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서울로, 국회로 올라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품어 주어야 할 정치가 이분들

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못할 짓입니다.

'이제 시절이 바뀌었으니 친일의 역사 바로잡 아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이제 대우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항일운동가 그리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고령이 되신 항일운동 후손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또다시 기자회 견을 위해 국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존경받아 야 할 이들을 누가 분노케 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역사 왜곡 망언은 지금 당장 중 단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독재까지 지 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아픈 역사 를 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1 만세운동과 독립투쟁으로, 4·19 항쟁으 로,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87년 6월 항쟁으로 그리고 가깝게는 2016년 촛불항쟁으로 우리는 오 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친일, 군사, 분단, 국정농단의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역사가 카 (Carr)의 말입니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 지만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과 나경 원 대표가 사용할 만한 논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때는 친일을 감추기 위해 항일운동을 폄하하 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사독재를 정당화하기 위 해 5·18 민중항쟁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던 시 절도 있었습니다. 수구·보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5·18 민중항쟁과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 망언을 중단해 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자유라고 이야기하 지만 이 말은 대한민국을 친일의 정치, 군사독재 의 정치 그때로 되돌리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 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 스스로 퇴물이라는 선 언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촛불 민주주의 위에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화해와 평화시대에 서 있습니

자유한국당은 역사와 현재를 직시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달서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 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1 년 10개월 만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 박영선 국무위원후보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에서 정말 국무위원후보로 지명받을 만했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안하무인, 후안무치,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 증하기 위한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 해 시종일관 버티기로 일관하며 인사청문회를 무 력화시켰습니다.

박 후보자는 상위 1%, 소득으로는 0.1% 안에 속하는 특권층으로 아들은 학비가 연간 32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 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현재는 학 비만 연간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미국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등 소위 정치판 스카이 캐슬의 전 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6000만 원짜 리 최고급 사교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골 프 회원권도 2개 합쳐 1억 2800만 원짜리를 가지 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정의를 주장하고 특권층을 공격해 오면서 정작 본인은 언론에 보도되었듯 남편 생 일을 맞아 호화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초 호화 생활을 즐겨 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급 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등으로 현장에서 가장 고통받으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58만 중소·벤처기업 인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 상위 1%인 박영선 후보자가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일할 만한 도덕 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자는 자료 요청에 끝까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청문위원들은 지난 14일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는 자료와 재 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 보를 찾아가며 청문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유한국당 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박영선 후보자는 묵묵부답으로 외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덧셈, 뺄셈도 못 한다'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오만방자하고 버티기로 일관했던 박영선 후보자의 태도는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청문위원들에게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동의를 못 받아제출을 할 수 없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아들의 인감이 없어 제출을 못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한편 온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던 평창 올림 픽 갑질 패딩 사건에 관련해서는 패딩을 준 사람 을 밝히라고 하자 '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했 다'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국회 회기 중 부부 동반 해외 골프여행을 확인하려 하자 전 정권의 사찰이라면서 피해자인 척 위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놓지 않은 자료를 청문회장에서 들이밀면서 '사실관계는 이렇다'하기 일쑤였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청문위원들이 공격하면 맞받아치거나 수치가 틀렸다고 망신 주기 위해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는 물타기 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는 박영선 후보자는 그야말로 역대급 후보자였습니 다.

온갖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료도 내놓지 않아 결과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박영선 후보자는 즉각 사퇴

.....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나 한 부실 인사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지고 이제는 사퇴해야 될 때입니 다.

본 의원은 매번 청문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희 자리가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힘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정 세력이 아무리 억압하고 숨 기려 든다고 해도 모든 일이 은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는 희망을, 국민은 살아 있음을 매 순간 느낍니다.

.....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6인)

강 석 호 강 길 부 강 석 진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금 태 섭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두 관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수 김 성 식 김성 찬 김 성 환 김 성 원 金成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용 태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훈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희 상 맹 성 규 문 진 국 민경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선숙 박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쳙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서 형 수 워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워 송 갑 송 기 헌 송 석 준 석 송 언 석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신 보 라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기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혜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민 봉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만 희 이 동 섭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수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재 정 이 정 미 이정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읶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전 해 철 전 현 희 워 전 재 수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종 섭 정 춘 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재 성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1인) 김 태 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1인)

강 길 부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경 진 김 경 협 금 태 섭 김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김 두 관 김 명 연 철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상 훈 김 석 기 김 성식 김선 동 김성수 김 김성원 성 환 김세연 김성 찬 金成泰 김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재 김정우 김 경 김 정 김 정 호 정 김종민 재 김 훈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나 경 원 노 웅 래 맹 성 규 희 상 병 두 민홍철 문 진 국 문 门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선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완 수 박 용 진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반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쳙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11/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일 종 소 병 훈 설 성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희 경 신 경 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우 원 식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혜 옂 위 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유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일 규 유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한 홍 후 덕 윤 호 중 이동섭 윤 유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 ㅁ]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현재 이 학 재 인 재 근 이혜훈 이 후 삼 0 훈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세 균 정 갑 윤 정성호 정양석 정운천 정유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춘 숙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연 혜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경 호 표 창 원 추 미 애 추 혜 선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화 회

기권 의원(5인)

강석진 김한표 백승주 유기준 정우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8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 석 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무성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석기 김 상 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문 진 국 노 웅 래 맹성규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덕 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성 중 박 맹 우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형 수 성일종 서 청 원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언 석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오 신 환 원 혜 영 우 원 식 위성 곤 유 기 준 유민봉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유 상 직 윤 상 현 윤 일 규 윤 소 하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원 욱 이정미 이재정 0 정 쳙 이 종 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찬 열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찬 이 혀 재 이혜훈 이 후 삼 0] 후 장 병 완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 우 택 정세균 정양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춘 숙 정태옥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채 이 배 주 승용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28인)

강 석 호 강 길 부 강석 진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두 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찬 김성원 金成泰 김성환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진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민 병 두 문 진 국 민경욱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성 중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청 원 서 삼 석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송 언 석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동섭 이 상 민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상헌 이수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용 호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진복 이 찬 열 이 학 영 이철규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재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임 종 성 0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장 병 완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현 희 정성호 정 갑 윤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유 섭 정인화 정 종 섭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주 광 덕 조 승 래 채 이 배 주 승 용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4인) 김 종 훈 심 상 정 추 혜 선 윤 소 하 기권 의원(3인) 박 주 선 손 금 주 이 해 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6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성동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기선 김 동 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병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맹성규 노 웅 래 문 희 상 민병두 문 진 국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정 박 주 선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손 금 주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신 보 라 심기준 안 규 백 심 상 정 심 재 철 안 상 수 어 기 구 엄용수 안 호 영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일 규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만 희 이 동 섭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수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석현 이용득 이용호 이 워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정미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걸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후 삼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임 재 훈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춘 숙 정 태 옥 정 종 섭 조 경 태 조 승 래 주광덕 주 승용 채 이 배 천정배 최경화(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영 표 황 주 홍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4인)

강석호 강 길 부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경 진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병 관 김병기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 석 기 김성수 김 성 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용 태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진 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대 출 박 맹 우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주 박 성 중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반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소 병 훈 성일종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워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주 영 이종배 이진복 이 찬 열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재 이 학 영 이 해 차 이 현 재 이 후 삼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장 정 숙 완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춘 숙 조경태 조 승 래 주광덕 주 승 용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정

훈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함 진 규 홍 익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기권 의원(4인)

강 효 상 곽 상 도 이상헌 정 태 옥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0인)

강 길 부 강 창 일 강석 진 강석호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강 효 상 곽 대 훈 권미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 성 환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회 김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선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성일종 소 병 훈 설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창 현 심기준 신용 현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심 재 권 안 호 영 어 기 구 안 상 수 엄용수 여 상 규 오 영 훈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종 필 유 후 덕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 상 민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학 영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0] 후 인 재 근 임 재 훈 장 병 완 임 종 성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현 회 전 혜 숙 정갑윤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성 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춘 숙 정태옥 주 승용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운 열 최 재 성 최 연 혜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기권 의원(4인)

곽 상 도 윤 소 하 이 상 돈 정세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8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경 진 김 도 읍 김 두 관 김 규 환 김 동 철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성 찬 金成泰 김성환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철 민 태 년 김 태 흠 김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기권 의원(2인)

추 미 애

함 진 규

홍 일 표

김기선 이 상 돈

추 혜 선

홍 문 표

홍 철 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2인)

맹성규

민병두

박 대 출

박성중

박용진

박 주 민

백 재 현

서 영 교

성일종

송 갑 석

송 영 길

신 동 근

신 창 현

심 재 철

어 기 구

오 영 훈

원 혜 영

유 민 봉

유 재 중

윤 소 하

윤 준 호

이 동 섭

이석현

이용득

이 은 재

이정현

이종배

이채익

이태규

이 헌 승

장 병 완

전 혜 숙

정 양 석

정 인 화

조 승 래

천 정 배

최 연 혜

추경호

한 정 애

홍 익 표

황 주 홍

훈

0]

노 웅 래

민경욱

박 광 온

박 선 숙

박 완 주

백 승 주

서 삼 석

손 혜 원

송 언 석

신 경 민

신용 현

심 재 권

안 호 영

오 신 환

원 유 철

유동수

유 의 동

유 상 현

윤 종 필

윤 후 덕

이 상 헌

이 완 영

이 은 권

이정미

이종명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해 찬

이 후 삼

임 종 성

전 현 희

정세 균

정유섭

조 경 태

채 이 배

최도자

최 재 성

표 창 원

홍 영 표

황 영 철

정

훈

박

설

강 길 부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김 경 진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동 철 김민기 병 관 김 명 연 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식 김 성 원 김성 찬 김 수 민 김성환 세 연 金成泰 김 김 영 주 영 진 김 영 호 김 순 례 김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정호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태 흠 김 한 표 나 경 원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병 두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홍 근 백 재 현 백 승 주 백 혜 변 재 일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갑 석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오 신 환 원 유 철 워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민 봉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일 규 윤 재 옥 윤 소 하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석 현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 진 복 이 찬 열 이태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인 재 근 0 훈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유 섭 정춘숙 정태옥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천 정 배 주 승 용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최 재 성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함 진 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은 권

투표 의원(233인)

기권 의원(2인)

김 무 성

찬성 의원(226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 성 찬 김 수 민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종회 김 종 훈 김 정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 병 두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성중 박 맹 우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재 호 박 박 주 선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성일종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철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위성 곤 유 민 봉 유동수 유 승 민 유승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일 규 유 재 옥 유 종 필 유 준 호 윤 한 홍 윤 후 덕 이동섭 윤 호 중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상 헌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정현 이 주 영 이종배 이진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혜훈 이 후 삼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전 재 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회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양석 정 우 택 정세균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춘 숙 정 태 옥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최 재 성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기권 의원(7인)

김 광 림 김 승 희 김 태 년 백 재 현 이태규 주 승 용 황 주 홍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1인)

강 창 일 강 길 부 강석 진 강 석 호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진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경 협 김 광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 성 환 김세연 김수민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회 김 철 민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재 호 박 완 주 박인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변 재 일 백 재 현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일종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영 길 송 기 헌 송 언 석 송옥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상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일 규 윤 재 옥 윤종 필 윤 준 호 윤 후 덕 윤 한 홍 윤 호 중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상헌 이수혁 이양수 이용득 이 은 권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진복 이 찬 열 이태규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 해 차 이 현 재 이혜훈 이 후 삼 0] 훈 임 재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현 희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 양 석 정 우 택 정세균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주 승 용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최 도 자 최 재 성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1인)

손 금 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29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주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재 김정우 정 호 김 정 훈 김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한 표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선 숙 박성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순 자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손 금 주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희 경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동 근 신 상 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재 중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상헌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차 이 현 재 이 헌 승 이혜훈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세 균 전 회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양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춘숙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주 승 용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경호 표 창 원 추 미 애 추 혜 선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4인)

박 대 출 안 상 수 윤 상 직 정 우 택 (김병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 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29인, 기권 의원 4인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28인)

강 길 부 강 창 일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기 동 민 권 칠 승 금 태 섭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 세 연 김성환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회 김 중 로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문 진 국 문 희 상 노 웅 래 맹성 규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덕 흠 박 광 온 박 맹 우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인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설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워 혜 영 오 영훈 오제세 우 상 호 유민봉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일 규 유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후 덕 윤 호 중 이 만 희 이명수 이 동 섭 이 상 돈 이 상 민 이상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용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현 이재정 이종걸 이 종 구 이종배 이 주 영 이종명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헌승 이혜훈 이현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주 승 용 채 이 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최 재 성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8인) 김 종 훈 김 철 민 박 대 출 윤 상 직 윤 소 하 윤 한 홍 이정미 추 혜 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3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경 대 수 고 용 진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진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金成泰 김성원 김성환 김 성 찬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남 인 순 나 경 원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대 출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인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박 정 백 승 주 변 재 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워 서 형 수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금 주 설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갑 석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상 진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규 백 심 재 권 안 상 수 심 재 철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상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상 직 유 소 하 유일 규 유 재 옥 유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상헌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 찬 열 이철규 이 철 희 이 학 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0] 인 재 근 임 재 훈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세균 정 양 석 정성호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인화 제 유 경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주 승 용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인호 최 운 열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익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2인)

김 태 흠 이 종 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0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고용진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림 김 관 영 김 광 수 김 도 읍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석기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성환 김 수 민

김 승 회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호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맹성규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맹 우 박 선 숙 박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 재 호 박 박 인 숙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후 소병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어 기 구 안 상 수 안 호 영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일 규 윤 소 하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유 호 중 윤 후 덕 이 동 섭 이만회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양수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정미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이 후 삼 인 재 근 0] 훈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현 희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양석 정세균 정용기 정 운 천 정유섭 정 인 화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주 승 용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인호 최 재 성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함 진 규 홍 문 표 한 정 애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영 철 기권 의원(4인) 박 대 출 박 덕 흠 성일종 정 우 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길 부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관 영 광 림 김 광 수 김 경 협 긲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규 환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병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 성 환 김세연 김 수 민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정 우 김 정 재 김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맹 우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설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보 라 신용 현 신 동 근 신 상 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어기구 심 재 철 안 호 영 여 상 규 엄용수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기준 유의동 윤 관 석 유 승 희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일 규 윤 소 하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이 동 섭 이 만 희 윤 후 덕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양 수 이 용 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현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 채 익 이 찬 열 이 철 규 이태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인 재 근 이혜훈 0 훈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용 기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주 승용 천 정 배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최 재 성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문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2인)

강석호 홍일표

기권 의원(18인)

강석 진 곽 상 도 권성동 박 대 출 박 주 선 박 덕 흠 박 성 중 성일종 손 금 주 안 상 수 윤 한 홍 이 명 수 이 주 영 이종명 이진복 이종배 정 우 택 정 유 섭

(강석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11인, 반대 의원 2인임)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189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강 효 상 경 대 수 고용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동 철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성환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호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맹성규 노 웅 래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문 진 국 박 대 출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민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영 길 손 혜 원 송 갑 석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아 호 영 어 기 구 여 상 규 오 신 환 우 상 호 오 영 훈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유민 봉 유기준 유동수 유 의 동 유 승 민 유승희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동 섭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헌 이 수 혁 이 석 혀 이양수 이용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철규 이 찬 열 이 철 희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혜 훈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제 윤 경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주 승용 지 상 욱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문 종 홍문표 홍 익 표 홍일 표

반대 의원(4인)

윤 소 하

이정현

권 성 동 김무성 김 종 훈 홍 철 호 기권 의원(31인) 김기선 권 미 혁 金成泰 김세연 박선숙 박성중 박 완 수 백 혜 련 송 옥 주 송 기 헌 송 희 경 심 상 정 안 규 백 안 상 수 위성 곤 유 재 중

이 만 희

이 종 명

이정미

이 주 영

윤 종 필

이 종 구

황 주 홍

이 춘 석 이 현 재 정 갑 윤 추경호 추 혜 선 황 영 철 황 주 홍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길 부 강 창 일 강석 진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용 진 곽 대 훈 권 은 희 곽 상 도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경 진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광 림 김 도 읍 김 병 관 김동철 김 민 기 김 명 연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찬 김수민 김성환 김세연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 성 규 문 진 국 문 회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훈 성일종 소 병 훈 설 손 혜 원 송 갑 석 송 석 준 송 영 길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제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혜영 유기준 유동수 유민 봉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일 규 유 재 옥 유 호 중 유 후 덕 윤 준 호 이 동 섭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상 헌 이 수 혁 이양수 이석현 이용득 이용호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종배 이 철 규 이 차 열 이 채 익 이철희 이 해 찬 이태규 이 학 영 이학재 이 헌 승 이혜훈 이 후 삼 훈 이 장 병 완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춘 숙 제 유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주 광 덕 주 승용 지 상 욱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반대 의원(4인) 김 무 성 권성동 김 종 훈 홍철호 기권 의원(32인) 권 미 혁 김 규 환 김기선 金成泰 박선숙 박성중 박 완 수 백 혜 련 서 삼 석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유 재 중 안 상 수 심 상 정 위성 곤 윤 소 하 윤 종 필 윤 한 홍 이 만 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정미 이종명 이 현 재 추 혜 선 이 춘 석 정양석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24인)

황 영 철

홍 문 종

함 진 규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완 주

찬성 의원(222인)

강 길 부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강 효 상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경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기선 김 광 수 김 규 환 김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식 김성환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맹 우 박 덕 흠 박 범 계 박 선 숙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선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형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설 후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보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영 훈 오 제 세 오 신 환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일 규 윤 재 옥 윤 한 홍 윤 종 필 윤 준 호 윤호중 이 만 희 이명수 윤 후 덕 이 상 민 이 상 헌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은 권 이용득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미 이재정 이정 이 종 구 이종명 쳙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태규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후 삼 이 혜 훈 0] 후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우 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춘 숙 제 윤 경 조경태 주 광 덕 주 승 용 조 승 래 지 상 욱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최 재 성 추경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2인)

김 정 우 이 동 섭

○출석 의원(27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경 대 수 강 훈 식 권 미 혁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민기 병 관 김 병 기 김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성 찬 김 金成泰 김성환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승 회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정우 김정재 김 정 훈 김 정 호 김종민 김 종 석 종 회 김 종 훈 김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박 경 미 민홍철 박 광 온 박 대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선 숙 박성중 박 완 주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혜 련 백 승 주 백 재 혅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11/ 서 청 원 서 형 수 일 종 소 병 훈 설 후 성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언 석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기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위성 곤 유동수 유민봉 유 은 혜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소 하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민 이 상 돈 이상헌 이석현 이 양수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진 복

정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헌승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인 재 근 이 훈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성호 정 갑 윤 정 우 택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태 옥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홍 문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개의 시 재석 의원(241인)

강 병 원 강 길 부 강석 진 강 석 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부 겸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석기 김선 동 김 성 수 김성식 김 성 원 金成泰 김 성 환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호 김용 태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맹성규 문 진 국 민병두 민홍철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형 수 성 일 종 서 청 원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희 경 신 동 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상 진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기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의 동 유재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소 하 윤 한 홍 윤 후 덕 윤 준 호 윤 호 중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상 민 이상헌 이석현 이 양수 이 언 주 이용득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장 우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찬 열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후 삼 인 재 근 이혜훈 0]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임 재 훈 전 재 수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성 호 정세 균 정 우 택 정양석 정운천 정 유 섭 정 종 섭 정 춘 숙 태 옥 조 경 태 정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최 도 자 추 미 애 최 재 성 추경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주 홍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산회 시 재석 의원(61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효 상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성 동 김 규 환 김민기 병 관 김 도 읍 김 김 삼 화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원 김성 찬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훈 김 한 표 김 현 아 나 경 원 문 진 국 문 희 상 송 언 석 송 희 경 신 용 현 안 상 수 유 민 봉 엄용수

윤 종 필	윤 한 홍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양 수	이 은 권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현 재
이 혜 훈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종 섭	조 배 숙	조 승 래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추 경 호	함 진 규
홍 문 표			

○청가 의원(17인)

김 영 춘 김 현 미 도 종 환 박 병 석 박 영 선 안 민 석 염 동 열 유 성 엽 윤 영 일 임 이 자 장 석 춘 정 동 영 정 재 호 정 진 석 조 훈 현 진 선 미 짓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은 혜 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7] 국 방 부 장 관 두 정 경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0] 개 호 환 경 부 장 관 조 명 래 고용노동부장관 0] 재 갑

○출석 정부위원

국 무 조 정 실 장 노 형 욱 국민권 익 위 원 장 박 은 정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정 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2019. 3. 26.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교 육	진 영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2019.
외교통일	박경미	진 영	니물이인구경	3. 25.
교 육	신경민	진선미		
业 五	박경미	진 영		
외교통일	진 영	박경미		
문화체육 관 광	진선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2019. 3. 26.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김부겸	맹성규		
보건복지	맹성규	김부겸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정보	유은혜	송옥주		
방송통신	김영춘	김병기		
국 방	김병기	김영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맹성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김부겸	맹성규		2019. 3. 27.
환경노동	송옥주	유은혜		
정 무	성일종	김규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김규환	성일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이우현	김정재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김정재	이우현		

○의안 제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2. 김경진·김병욱·김광수·안상수· 이찬열·조경태·채이배·어기구·이종걸· 박덕흠·윤종필 의원 발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2. 백승주·최연혜·金成泰·윤재옥· 김규환·윤상직·송희경·신보라·김학용· 박명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혜련·송갑석·박정·김병기· 신창현·박찬대·윤소하·원혜영·기동민· 소병훈 의원 발의)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이언주·정유섭·유승민·김영우· 성일종·하태경·김종석·윤상직·정태옥· 박대출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2. 이언주·김중로·조경태·김종석· 정태옥·정유섭·박대출·박맹우·정종섭· 이혜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유승민 · 박인숙 · 김세연 · 이언주 · 유의동 · 하태경 · 정병국 · 지상욱 · 김중로 · 이상돈 · 권은희 · 오신환 · 김현아 · 정운천 · 안규백ㆍ이혜훈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손금주·김경진·백혜련·표창원· 박주민·황주홍·최경환(평)·김광수·신용현· 김삼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2. 박용진·유동수·이종걸·강병원· 조승래 · 송영길 · 김해영 · 이철희 · 박찬대 · 신경민 의원 발의)

3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손금주·김종회·이용호·박주민· 금태섭·최경환(평)·김광수·신용현·김삼화· 황주홍 의원 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손금주・김종회・이용호・박주민・ 금태섭 · 최경환(평) · 김광수 · 신용현 · 김삼화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워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승주・윤재옥・문진국・김규환・ 윤상직 · 최연혜 · 송희경 · 신보라 · 유기준 · 김학용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아**(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승주·박덕흠·장석춘·박명재· 유민봉 · 강석진 · 송언석 · 추경호 · 신보라 · 이만희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백승주·박명재·박덕흠·김영우· **홍철호・장석춘・최연혜・金成泰・윤재옥・** 문진국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2. 백승주·박덕흠·장석춘·조훈현·

김영우・박명재・추경호・이주영・金成泰・ 윤재옥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김성원·정유섭·박명재·이은권· 김학용 · 김정재 · 성일종 · 박순자 · 이명수 · 정태옥 · 김명연 · 박인숙 · 박덕흠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이언주·정종섭·김중로·박대출· 윤상직 · 박맹우 · 정태옥 · 주광덕 · 조경태 · 김진태·김종석·정유섭·김영우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김영호·김병기·소병훈·송옥주· 송갑석 · 김철민 · 노웅래 · 신창현 · 김영진 · 김민기 · 기동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정인화·이상헌·이동섭·조배숙· 정동영 · 윤영일 · 홍문표 · 김종회 · 성일종 · 김광수ㆍ최경환(평)ㆍ유성엽ㆍ이용주ㆍ황주홍 의워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함진규·박덕흠·이헌승·곽대훈· 김기선 · 추경호 · 김석기 · 김승희 · 윤한홍 · 송석준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강길부·박완수·백재현·송갑석· 권칠승・곽대훈・정유섭・최인호・이훈・ 어기구 · 우원식 · 박정 · 유민봉 의원 발의)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정인화·이상헌·이동섭·조배숙· 윤영일·홍문표·김종회·김광수·최경환(평)· 유성엽·이용주·황주홍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송석준·전희경·이현재·김선동· 김현아 · 주광덕 · 김종석 · 홍철호 · 박인숙 ·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정춘숙·김상희·전혜숙·윤후덕· 장정숙·기동민·김영진·김경협·강훈식· 이용득·박정·오영훈·소병훈·윤소하 의원 발의)

3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2. 김성원·김명연·김정재·김학용· 박덕흠·박명재·박순자·박인숙·성일종· 이명수·이은권·정유섭·정태옥 의원 발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김철민·김현권·이개호·권칠승· 서삼석·윤관석·이용득·신동근·신창현· 이찬열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황희·김영진·최인호·전해철· 심재권·어기구·홍익표·고용진·안호영· 김철민 의원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정성호·박명재·이상민·박선숙· 이찬열·윤관석·윤호중·박정·정인화· 황주홍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3. 22. 송석준·전희경·이현재·김선동· 김현아·주광덕·김종석·홍철호·박인숙·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2019. 3. 22. 나경원·강석진·강석호·강효상· 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 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 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 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 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 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 김한표·김현아·문진국·민경욱·박대출· 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 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현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경환(한)・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버륙아(호무표 이외 대표박이)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홍문표·윤종필·김영우·김상훈· 정유섭·안상수·김성찬·정인화·정태옥·

이명수 의원 발의) 3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전재수·신창현·이종걸·이찬열·최인호·박재호·윤준호·설훈·이원욱·김해영 의원 발의)

3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조승래·서영교·정재호·김민기·기동민·박찬대·이후삼·김해영·이동섭·박용진·김종민·신창현·정세균·우원식·전재수·윤일규·유동수·김상희·안민석·노웅래·심기준·박홍근·이용득·제윤경·윤관석·어기구·김병관·김두관·조응천·윤준호·이석현·신경민·서삼석·정춘숙·최재성·맹성규·박완주·위성곤·설훈·이상헌·김한정·김병기·김철민·이훈·심재권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조승래·서영교·정재호·김민기· 기동민·박찬대·이후삼·김해영·이동섭· 박용진·김종민·신창현·정세균·우원식· 전재수·윤일규·유동수·김상희·안민석· 노응래·심기준·박홍근·이용득·제윤경· 윤관석·어기구·김병관·김두관·조응천· 윤준호·이석현·신경민·서삼석·정춘숙· 최재성 · 맹성규 · 박완주 · 위성곤 · 설훈 · 이상헌 · 김한정 · 김병기 · 김철민 · 이훈 · 심재권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5. 조승래·서영교·정재호·김민기· 기동민 · 박찬대 · 이후삼 · 김해영 · 이동섭 · 박용진 · 김종민 · 신창현 · 정세균 · 우원식 · 전재수 · 윤일규 · 유동수 · 김상희 · 안민석 · 노웅래 · 심기준 · 박홍근 · 이용득 · 제윤경 · 윤관석 · 어기구 · 김병관 · 김두관 · 조응천 · 윤준호 · 이석현 · 신경민 · 서삼석 · 정춘숙 · 최재성 · 맹성규 · 박완주 · 위성곤 · 설훈 · 이상헌 · 김한정 · 김병기 · 김철민 · 이훈 · 심재권 의원 발의)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조승래·박광온·이상헌·김민기· 기동민・정재호・윤일규・이후삼・박홍근・ 이용득 · 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이상민ㆍ이종걸ㆍ어기구ㆍ이원욱ㆍ 이규희・안민석・전재수・이석현・김두관・ 정성호 의원 발의)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5. 이채익·김태흠·최교일·박완수· 이진복・유민봉・김영우・안상수・홍문표・ 정인화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5. 정동영·강창일·김관영·김광수· 김영호·김종회·김한정·도종환·박주현· 변재일 · 안호영 · 유성엽 · 오제세 · 이용호 · 이춘석・장정숙・정우택・정운천・정인화・ 조배숙·주승용·황주홍·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5. 장정숙·임재훈·김경진·정인화· 천정배·박찬대·전혜숙·윤소하·조배숙· 정춘숙 의원 발의)

3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임이자·장석춘·정갑윤·김학용· 박인숙 · 최교일 · 이양수 · 김순례 · 김규환 · 유민봉 의원 발의)

3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윤준호·황주홍·신창현·고용진· 김종민・송기헌・최인호・전재수・박광온・ 이재정 의원 발의)

3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5. 신용현·김삼화·김수민·최도자· 채이배 · 전혜숙 · 황주홍 · 이찬열 · 윤종필 · 정춘숙·박경미 의원 발의)

성차별 ·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전혜숙·이찬열·장정숙·신용현· 윤소하・송옥주・김상희・남인순・신경민・ 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 3. 25.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 2019. 3.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요청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미선) 인사청문요청안 (이상 2건 2019. 3. 26.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3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이찬열·전혜숙·황주홍·김동철· 김철민 · 윤후덕 · 유승희 · 박찬대 · 윤관석 · 박주민·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

3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김해영·조승래·서형수·박재호· 김종훈・전재수・남인순・박용진・윤호중・ 최인호·이학영·신경민·김태년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김해영·조승래·서형수·박재호· 김종훈·전재수·남인순·박용진·윤호중· 최인호·이학영·신경민·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백승주·김동철·윤영석·박순자· 金成泰·윤재옥·문진국·김규환·윤상직· 최연혜 의원 발의)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김동철·이동섭·한정애·김삼화· 김중로·변재일·문진국·김영호·이찬열· 박주선 의원 발의)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이장우·전희경·엄용수·김상훈·조훈현·곽대훈·윤재옥·김성찬·경대수·성일종·김진태·박대출·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6. 이혜훈·정인화·김삼화·김관영· 이종명·조경태·유승민·이언주·김상훈· 주호영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이혜훈·정인화·김삼화·김관영· 이종명·조경태·유승민·이언주·김상훈· 주호영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이혜훈·김경진·정인화·김삼화· 김관영·이종명·조경태·유승민·이언주· 김상훈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6. 이은권·민경욱·김성찬·金成泰· 박대출·김규환·김성원·정유섭·홍문표· 윤상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 3. 26. 교육위원장 제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 3. 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19. 3. 26. 나경원·백승주·김정재·강효상· 김현아·김규환·강석진·이은권·김승희· 송석준·정유섭·정종섭·송언석·이만희· 정양석·이양수·최교일·김성태·이은재· 임이자·성일종·곽상도 의원 동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7. 민경욱·김도읍·김명연·정유섭·이은권·김현아·신상진·박덕흠·윤재옥· 박성중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9. 3. 27. 이종걸·신창현·송영길·김병욱· 신동근·유승희·이상민·박용진·이철희· 황주홍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3. 27. 민경욱·김명연·문진국·이은권· 김현아·신상진·박덕흠·윤재옥·박성중· 김규환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3. 27. 천정배·김경진·김광수·박선숙· 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정미·장정숙· 조배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27. 함진규·김용태·김성원·정유섭· 김학용·주광덕·윤재옥·박덕흠·김종석· 이주영 의원 발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7. 권칠승·박정·박광온·전혜숙· 이훈·최인호·서형수·김철민·고용진· 윤준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 2019. 3. 27.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 3, 28, 정무위원장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9. 3. 28. 교육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3. 29. 정부 제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표창원·이개호·박완주·전재수· 서영교 · 김영호 · 임종성 · 소병훈 · 김철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관석 · 김두관 · 민병두 · 최도자 · 유승희 · 문희상 · 박정 · 신창현 · 홍의락·김정우·유동수·정성호 의원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최교일·김용태·김광림·송희경· 이철규・김순례・金成泰・정유섭・조훈현・ 김진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과하 법률안

(2016. 6. 27. 정부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 5.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2018. 3. 6. 민병두・강병원・이훈・송옥주・ 김성수 · 윤후덕 · 조승래 · 서형수 · 권미혁 · 소병훈 · 제윤경 · 이재정 · 진선미 · 김종민 · 박홍근 · 김태년 · 유승희 · 안규백 · 신경민 · 권칠승 · 임종성 · 김현권 · 안호영 · 유은혜 · 고용진 · 기동민 · 원혜영 · 이원욱 · 홍익표 · 김경협・유동수・김경수・전재수・오영훈・ 위성곤 · 변재일 · 박용진 · 한정애 · 김진표 · 민홍철 · 김해영 · 박광온 · 김정우 · 강훈식 · 추미애 의원 발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8. 5. 30. 김종석·함진규·김용태·정진석· 김광림 · 정갑윤 · 김학용 · 추경호 · 윤한홍 · 경대수·김규환·곽대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정무위원장 보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노웅래·조승래·서영교·박남춘· 유동수 · 강창일 · 박찬대 · 오영훈 · 전재수 · 정성호 · 안규백 · 김병욱 · 박정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1. 염동열·김석기·홍철호·김무성· 김성태 · 윤종필 · 조훈현 · 민경욱 · 김명연 · 나경원 · 이종배 · 박성중 · 이군현 · 김용태 · 전희경 · 김세연 · 정갑윤 · 최인호 · 여상규 · 박인숙·이명수·박맹우·김재경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7. 2. 9. 조훈현・권성동・金成泰・김재경・ 송희경 · 신보라 · 염동열 · 이종배 · 최연혜 · 전희경·정갑유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이동섭·김광수·김경진·노웅래· 김관영 · 정인화 · 김삼화 · 장정숙 · 송기석 · 이찬열 · 주승용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이학재・정병국・조배숙・유승민・ 박덕흠 · 윤종필 · 김세연 · 지상욱 · 하태경 · 이동섭ㆍ유동수ㆍ김삼화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손혜원·강훈식·권미혁·김병기· 김영호 · 문희상 · 안민석 · 유동수 · 이동섭 · 진선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2018. 7. 30. 이은재·윤영석·김석기·임이자· 최교일 · 이명수 · 이종배 · 윤한홍 · 김학용 · 박성중・염동열・이철규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8. 22. 박경미·이찬열·백혜련·조정식· 천정배·고용진·유동수·진선미·인재근· 신동근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8. 30. 박경미·조정식·김병기·백혜련· 송갑석·최도자·이규희·김정우·임종성· 박찬대·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교육위원장 보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

(2017. 3. 7. 이종명·홍문표·金成泰·송희경· 곽대훈·김규환·김용태·김진태·곽상도· 김태흠·경대수·윤종필·서청원·김종대· 김성찬·김선동·홍철호·박명재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방위원장 보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5. 11.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페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1. 4. 하태경·김삼화·박병석·송옥주· 오신환·유의동·이석현·이용득·이용주· 정병국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7. 1. 25.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황주홍·정동영·장정숙·김종회· 최경환(평)·김경진·박지원·조배숙·박주현· 김광수·이용주·천정배·윤영일·정인화· 이상돈·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3. 16. 권미혁·남인순·김상희·정춘숙· 최인호·송옥주·전혜숙·백혜련·유승희· 윤소하·신창현·양승조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4. 11. 강병원·김병욱·김현권·임종성· 서형수·김경협·백혜런·이정미·송옥주· 강훈식·유후덕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20. 한정애·김철민·우원식·이인영· 이재정·이찬열·서영교·윤영일·이학영· 김경협·금태섭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6. 8. 16. 하태경·김광림·문진국·신보라· 이종구·이채익·임이자·장석춘·전희경· 정진석·조경태·조원진·권석창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19. 3. 26. 나경원·백승주·김정재·강효상· 김현아·김규환·강석진·이은권·김승희· 송석준·정유섭·정종섭·송언석·이만희· 정양석·이양수·최교일·김성태·이은재· 임이자·성일종·곽상도 의원 동의) 3월 27일 동의자 철회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에 관한 질문서 (2019. 3. 22. 천정배 의원 제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후보에 관한 질문서 (2019. 3. 25. 박주현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2019. 3. 26. 중소기업청 제출)3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송부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

(2019. 3. 26. 정부 제출)

3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송부

2018 회계연도 대한적십자사 세입·세출결산서

(2019. 3. 26. 대한적십자사 제출)

3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처리에 대한 감사」감사결과보고서

(2019. 3. 26. 감사원 제출)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2019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19. 3. 27. 정부 제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